이재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알림

헤이세이 30년 9월 4일 태풍21호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드립니다.

이번 지진으로 인해, 가옥의 손괴 등 피해를 입으신 분 중에 각종 제도의 이용 혹은 보험회사에의 제출을 위해「이재증명서」가 필요하신분의 교부 신청을 접수합니다.

〇 피해조사에 대해서

이재증명서를 교부하기 위해서, 손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, 고정자산세과에 연락 부탁드립니다.

〇 이재증명서의 발행에 대해서

　피해 조사의 이튿날 이후에 고정자산세과의 창구에서 교부합니다.

　필요 서류　① 이재증명서 교부신청서

　　　　　　 ②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(운전면허증, 건강보험증 등)

　　　　　　 ③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

・이재증명서 교부 신청서

・이재증명서 교부 신청서（기재예）

〇피해 판정 구분에 대해서

　이재증명서에 의한 손괴정도는, 내각부의 피해인정기준에 의거해, 가옥의 기울어진 정도나 부위(지붕, 벽, 건물 기초 등) 의 손괴상황을 확인해 인정합니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피해판정구분 | 피해인정기준 |
| 전괴 | 거처가 거주를 위한 기본적 기능을 상실한 정도.  거처 전부가 도괴, 유실, 매몰, 소실된 것, 혹은 거처의 손괴가 심해, 보수에 의해 원래대로 재사용하는 것이 힘든 정도. |
| 대규모 반괴 | 거주하는 거처가 반괴해, 구조대력상 주요한 부분의 보수를 포함한 대규모의 보수를 하지 않으면 해당 거처에 거주하는 것이 힘든 정도. |
| 반괴 | 거처가 거주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의 일부를 상실한 것. 거처의 손괴가 심하지만 보수하면 원래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정도. |
| 일부 손괴(반괴 미만) | 전괴, 대규모 반괴, 반괴 미만의 거처의 파손으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정도. |

문의처

고정자산세과（시역소 제 1청사 2층 206번）

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이재증명담당　０６－６８５８－２４４７